

2011년 7월 26일

제18회 임시이사회 회의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2011년도 제18회 임시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① 회의일자 : 2011년 7월 26일(화)

② 회의장소 : 서면결의

③ 출석임원

- 이사회 의장 : 김 용 근 (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)
- 이 사 : 이 준 식 (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장)
정 양 호 (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)
조 원 국 (삼성전자 고문)
이 종 섭 (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)
윤 석 열 (삼성정밀화학 전무)
박 하 영 (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)
박 해 철 (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
이 상 룡 (경북대학교 공과대학장)
표 인 수 (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)
신 동 규 (세종대학교 연구산학협력처장)
송 혜 자 (주우암 대표이사)
※ 재적이사 14명 중 12명 결의
- 감 사 : 박 종 기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감사)

④ 불참인원

- 이 사 : 김 상 규 (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)
최 문 기 (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)

⑤ 상정안건(총 5건)

가. 의결안건 : 5건

- 제1호 2011년도 예비비 사용계획(안)
- 제2호 유연근무제도 도입계획 및 복무규정 개정(안)
- 제3호 보직자 성과연봉제도 도입계획 변경(안)
- 제4호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변경(안)
- 제5호 정관 개정(안)

⑥ 소관부서 :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의결안건 제1호 : 2011년도 예비비 사용계획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기획재정부에서 '10년도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
- 예비비 중 경영실적평가성과급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 사용승인을 받아 임직원 대상 성과급 지급을 추진

○ 경영평가 성과급 편성규모 및 사용계획

- 편성규모 : 1,078,362천원
- 사용계획 : 1,071,014천원

○ 사용계획

- “2011년도 예비비 사용계획(안)”의 이사회 의결 후 경영평가 성과급 세부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접수

□ 의결안건 제2호 : 유연근무제도 도입계획 및 복무규정 개정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-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목적
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통합 이후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으나,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
 - 제한된 T/O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유휴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필요성 대두
 -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 시급
- 유연근무제도 추진방향
 - 기존 업무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연근무제도 시행
 - 유형별 도입 가능 여부를 기관여건,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
- 유연근무제도 도입 관련 규정 개정
 - 복무규정에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의결

□ 의결안건 제3호 : 보직자 성과연봉제도 도입계획 변경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보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이드라인에 의거 '11년도부터 업적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등수준이 확대되는 성과연봉제도를 우선 적용 실시
- 低임금자와 高임금자 간 임금격차의 지속적인 확대 방지 필요
- 보직자 대상 성과연봉제도 도입 초기에 설계된 성과연봉 구조에서 비보직자로 전환 시 소멸되는 관리수당의 구조변경 필요

○ 성과연봉제도 내용 변경

- 기본연봉 인상방식
 - 기본연봉 인상은 성과와 임금수준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차등 적용되는 Merit Increase Table로 변경하여 운영
 - 低연봉 高성과자가 高연봉 低성과자를 Catch-up 할 수 있는 제도 정착
- 성과연봉제도 연봉구조
 -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수당을 직무급에 포함시켜 직책 활동지원비와 관리수당을 직무급으로 산정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의결

□ 의결안건 제4호 :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변경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2011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급여성 복리후생비 항목 중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조정

○ 변경내역

- (현행) 직원 1인당 200만원 실비 지원
- (변경) 공무원 관련 기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실비 지원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의결

□ 의결안건 제5호 : 정관 개정(안)

① 안건주요내용

○ 개요

- 기본재산의 가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
- 다만, 임대에 관한 주요사항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운영

○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
<p>제6조(기본재산의 처분제한) 진흥원의 재산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6조(기본재산의 처분제한) ① 진흥원의 재산중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주요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</p>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- 별도 의견 없음

③ 논의결론

- 원안의결